

결정번호 제2019-003호

## 사전협의 결과서

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가 되었음을 통지합니다.

신청인	성명 씨지앤대산전력(주) 전화번호 041-661-5541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대신읍 독곶1로 82(독곶리 634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 101-86-46259
<b>결정 내용</b>		
신청내용에 대한 종합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목적)</b> 씨지앤대산전력(주)는 목재펠릿(순수목재 1,423톤/일)을 사용하여 전력(100MWh)을 생산·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사업임</li> <li>• <b>(입지)</b> 사업장이 입지하고자 하는 지역은 전용공업지역, 일반산업단지으로, 입지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, 공사계획 인가('18.5.), 건축허가('18.8.)등을 완료하였음</li> <li>• <b>(시설 등)</b> 제출된 사전협의 신청 내용은 “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요령”에 따른 양식과 목차에 부합하며, 배출영향분석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계획 등의 내용이 적정</li> <li>• 다만, 본허가시 사전협의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오류를 수정하고, 관련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</li> </ul>	
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<b>(공정분류)</b> 사업장을 대분류 공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공정에 따라 관리공정번호 및 설치·운영 계획을 적절히 작성함</li> <li>• <b>(오염물질 저감)</b> 여과집진시설, 배연탈질, 배연탈황, 폐수처리시설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방지시설의 설치·운영 계획이 적정함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적 기준, 강화된 지역조례,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하도록 시설을 계획함</li> </ul> </li> </ul> ※ 다만, 통합공정도와 물질수지 중 확인된 일부 오류에 대해서는 본허가시 수정하여 진행 필요	
허가배출기준의 설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기(24항목), 수질(29항목), 악취(23항목), 잔류성유기오염물질(1항목)에 대한 허가배출기준(안)을 마련</li> <li>• 대기배출영향분석이 적정하게 수행되었으며, 이에 따른 허가배출기준(안)도 적정</li> </ul> * [대기환경보전법]상 '20년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 또는 충남도 조례에 따른 강화된 기준으로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하고, 허가배출기준으로 설정	
배출영향분석 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“표준 배출영향분석 프로그램”을 적용, 배출영향분석을 적절히 수행</li> <li>• 다만, <b>대기분야</b>의 경우 #A-5(분말활성탄 저장시설), #A-9(비산재 저장시설), #A-10(바닥재 저장시설)의 배가스 온도 등은 재확인 필요하며,</li> <li>• <b>수질분야</b>의 경우 씨텍 유수지를 거쳐 해양방류를 사유로 배출영향분석을 미수행 하였으므로,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시 필요</li> </ul>	

<p>그 밖의 의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『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6조에 따른 통합허가 신청 시,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배출되는 오염물질 항목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물질수지 및 통합공정도 중 일부 오류 수정</li> <li>- 종규모 산정근거 등 일부 오류 수정</li> <li>- 폐수배출시설의 오염물질 발생농도 및 약품사용량에 대한 증빙자료</li> <li>-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연료(목재펠릿)를 사용할 예정인 바, 이의 운영·유지관리 방안 제시</li> <li>- 굴뚝의 배가스 유량 및 온도 등에 대한 증빙자료</li> <li>- 소음·진동 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목록 제출(법적 허가(신고)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음)</li> <li>-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운영·관리방안</li> <li>- 소음·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(안) 제시</li> <li>- 각각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사양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 발생량 등 내용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중 누락사항(이황화탄소, 폐놀 등)</li> </ul> </li> <li>• 통합허가 완료한 후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해야하며, 사전협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신청하여야 함</li> </ul>
<p>2019 년            02 월            12일</p>	
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 align-items: center;"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><b>환경부장관</b></p> </div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width: 150px; height: 100px; 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"> <p>직인</p> </div> </div>	

※ 유의사항

-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내에 통합허가·변경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